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친족간 성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 전진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748호)

2026.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심 정 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개정안 주요내용	2
2. 공소시효 제도	3
3. 개정안 검토	4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전진속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2025. 10. 28.
3. 회 부 일: 2025. 10.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사소송법」은 공소시효에 관하여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친족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가족 내 위계·의존관계와 장기간의 은폐·침묵 유인이 결합되어 신고·수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함. 이로 인해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 완성으로 적정한 형사책임의 추궁이 좌절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피해의 특수성과 장기적 트라우마, 재범 위험을 고려할 때, 친족을 대상으로 한 특정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여 실체적 진실 규명과 피해자 보호를 실효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형법」상 특정 성범죄를 친족에 대하여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특례를 「형사소송법」에 명시하고, 친족의 범위를 「민법」에 따르도록 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제253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개정안 주요내용

개정안은 친족에 대하여 「형법」상 특정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해당 친족의 범위를 「민법」에 따르도록 하는 것임(안 제253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생략) <u><신설></u>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친족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의2(상습범) 또는 제305조의3(예비, 음모)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친족의 범위는 「민법」에 따른다.
<u><신설></u>	

2. 공소시효 제도

공소시효란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국가의 소추권이 소멸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제도로, 현행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법정형에 따라 1년에서 25년까지 공소시효 기간을 규정하고 제252조에서 시효의 기산점을 범죄행위 종료 시(공범은 공범의 최종행위의 종료 시 모두 기산)로 규정함.

현행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는 “사람을 살해한 범죄(중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특정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항은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도록 하는 기산점 특례를 두고 있음.

<특정범죄 공소시효 기산점 특례 관련 입법례>

법률	대상범죄	정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제1항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	성년까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년까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1항	아동학대범죄	성년까지

3. 개정안 검토

개정안은 「형법」 제32장(제297조부터 제305조의3까지) 강간과 추행의 죄에서 친족이 가해자가 될 수 없는 제303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만을 제외한 나머지 성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임.

친족간 성범죄는 가족 내 위계·의존관계와 장기간의 은폐·침묵 유인이 결합되어 신고·수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피해의 특수성과 장기적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어, 공소시효 배제를 통해 실체적 진실 규명과 피해자 보호의 실효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입법취지인데,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음.

첫째,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특정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등을 특별한 규정을 두는 경우를 분류하면, ① 살인죄, 강간등 살인·치사와 같이 범죄의 결과가 사망에 이른 경우, ②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등 고소인의 지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태를 반영한 경우, ③ DNA증거 등 범죄 발견을 위한 명확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로 나누어볼 수 있음.

그런데, 개정안은 현행의 공소시효 관련 특별규정과 다르게 범죄자가 친족인지, 친족인지 아닌지, 즉, “범죄자의 신분”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적용을 달리하려는 특징이 있음.

가해자가 친족인 경우만을 형사절차상 불이익하게 취급하기 위해서는

기본권 제한 법리상 차별적 대우에 대한 합리성이 요구되는데, 공범에 의한 성범죄에서 친족인 가해자, 연인·친구인 가해자, 특별한 관계에 있지 않은 가해자가 함께 범행을 저지른 사례를 가정하면, 친족인 가해자만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하고 나머지 공범자는 일반적인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결과가 발생하는바, 이렇게 동일한 범죄를 행한 공범자 간에 공소시효를 달리하는 것이 형사절차상 합리적인지에 대해 검토가 요청됨.

또한, 혈연관계가 아닌 인척관계에 있는 친족은 범죄행위 시 이후에 신분상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범죄자와 피해자 간 가변적인 신분관계에 기초하여 행위 시 가해자 신분을 이유로 가해자에게 형사절차상 불이익을 그 사망 시점까지 연장하는 것이 기본권 제한 법리의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 간의 균형성 요구에 맞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둘째, 개정안은 「형법」 제297조부터 제305조의3까지의 죄(제303조 제외)를 공소시효 배제 대상 범죄로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대상 범죄의 범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의 공소시효 특례와 비교하여 달라지는 문제가 있음.

개정안은 「형법」 제302조의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한 간음·추행죄”와 같은 범죄도 포함하고 있는데, 현행 성폭력처벌법에서 공소시효 배제 또는 특례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범죄보다 넓은 측면이 있음.

셋째, 친족의 범위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전체로 정하는 것은

성폭력처벌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¹⁾)에서 정한 친족의 범위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넓은 측면이 있음. 4촌 이내의 혈족·인척 및 동거하는 친족 등 실제적인 가족관계와 위계·의존관계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포함하고 있어,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기준으로 적용하기에는 그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한 측면이 있음.

예컨대 8촌 이내의 혈족에는 피해자와 실질적인 교류나 생활상의 의존관계가 없는 원거리 친족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친족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범죄의 특수성, 즉 가족 내 위계·의존관계 또는 지속적인 접촉관계로 인하여 신고가 지연되는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경우까지 공소시효를 배제할 가능성이 있음.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5조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범죄에 관하여 그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정하고 있으며,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공소시효 배제라는 중대한 예외를 설정하는 입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성폭력처벌법 제5조와 친족의 범위를 통일하거나, 개정안에서

1)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보다 넓은 범위를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별도의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실혼 배우자나 사실상의 양부모 등 법률상 친족관계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가족관계에 준하는 위계·의존관계가 형성된 경우를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5조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5조는 성폭력범죄의 경우 법률상 가족관계의 형식보다는 실제 생활관계에서 형성된 위계·의존관계가 범죄의 발생 및 피해자의 신고 지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런데 개정안이 민법상 친족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사실혼 배우자, 사실상의 양부모 등 법률상 친족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가족관계에 준하는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범죄는 공소시효 배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개정 취지가 몰각될 가능성이 있음.

넷째, 현행 성폭력처벌법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특례와 개정안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동일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규정이 중복·충돌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일정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의 연장

또는 배제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음. 이에 따라 개정안이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별도로 배제할 경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공소시효 특례가 중첩될 수 있음.

특히 미성년 피해자 또는 장애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별도의 공소시효 특례가 존재하므로, 친족관계와 피해자의 연령·장애 여부가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 각 규정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이 기존 공소시효 특례를 단순히 추가하는 방식으로 규정될 경우, 동일 범죄에 적용되는 공소시효 규정의 체계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기존 성폭력처벌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공소시효 관련 규정과의 관계를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063